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21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7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8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 1188 호

##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구 원창동 일원의 【인천북항(항만세부시설)원창동 39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8. 2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북항(항만세부시설)원창동39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원상협주식회사 외28인
3. 지적공부 확정내역

소재지	종전토지 지적공부			확정토지 지적공부		
	필지수	면적(m <sup>2</sup> )	비고	필지수	면적(m <sup>2</sup> )	비고
원창동	34	126,379.4m <sup>2</sup>	지번 조서 참 조	34	129,379.4m <sup>2</sup>	지번 조서 참 조

4. 시행일 : 2015. 08. 28.
5. 공고기간 : 2015. 08. 28. ~ 2015. 09. 11. (14일간)
6.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토지정보과 032-560-48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15- 46호

##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9. 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예방접종 국가지원대상자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지원대상자 변경
- 예방접종 국가지원 신청기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신청기한 폐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치법규 정비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 3. 주요내용

- 제2조 예방접종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삭제
- 제8조 위탁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중 신청기한 30일을 삭제
- 별표 서식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등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560-5053 (FAX 562-0707)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제정이유

- 예방접종 국가지원대상자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지원대상자 변경
- 예방접종 국가지원 신청기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신청기한 폐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치법규 정비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 3. 주요내용

- 제2조 예방접종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삭제
- 제8조 위탁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중 신청기한 30일을 삭제
- 별표 서식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 중 “서구”를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허위 기타”를 “허위,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후 30일 이내에”를 “후”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b>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b>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수탁자"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li> <li>▪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li> </ul>	
제5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li> </ul>	
제6조	백신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임시)예방접종</li> <li><input type="checkbox"/> Flu(인플루엔자)</li> </ul>	
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수탁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계약 조건 (뒷쪽)

“수탁자”는 다음과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접종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구 거주 ( ) 이어야 한다.
- ② 대상자 1인당 1회 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며, 지정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단체접종시(노인정, 복지관 등) 접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부담 없이 1인당 ( )원으로 한다.  
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반드시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⑤ 비용상환 신청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접종 당일 입력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수기기록에 의한 청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보관에 있어서 항상 2℃ ~ 8℃의 냉장온도를 유지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⑦ 예방접종(인플루엔자)약품은 국산 제품 및 수입 완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 수입완제품(생백신포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접종비 지급은 국산제품과 같으며 접종자에게 추가 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
- ⑧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 확인에 있어서 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에 주소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거나,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를 통하여 주소를 확인한다.  
대상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는 매년 결정되는 사항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u>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u>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인천광역시 서구민</u> ----- ----- -----.</p>
<p>제2조(예방접종대상) 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만 65세 이상의 주민</u></p> <p>2. ~ 5. (생략)</p> <p>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u>서구</u>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p>	<p>제2조(예방접종대상) ① ----- ----- -----.</p> <p>&lt;삭 제&gt;</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u>서구</u> (이하 "구"라 한다) ----- -----.</p>
<p>제6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제6조(위탁계약 해지) ----- ----- ----- -----.</p>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생략)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허위, 그 밖에 -----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7조(예방접종 비용) -----  
-----  
-----  
-----범위-----  
-----.

제8조(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  
-----후-----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시  
행에 -----  
-----.

## 관계법령 발취

### 행정규칙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 인천광역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 제목 2015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배포 안내

1. 예방접종관리과-2529(2015. 07. 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2015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전자문서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3. 지침 인쇄본은 8월 중 배포 예정이며, '예방접종 안내문<별첨 1>' 및 '예진표' <별첨 2>를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2015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별 첨. 1.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1부.  
 2. 예방접종 예진표-노인 인플루엔자용 1부. 끝.

### 인천광역시장

수신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건강증진과장),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인천광역시 남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연수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남동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부평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계양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강화군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용진군보건소장

주무관 이희율      공발관리담당 정혜림      보건증축과장 정원 2015. 7. 16.      심재복

참조자

시행 보건증축과-16863      (2015. 7. 16.)      접수 건강증진과-13787      (2015. 7. 16.)

주 406-7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본관 / http://incheon.go.kr  
407호

전화번호 032-440-2729      팩스번호 032-440-8657      / nemuri@korea.kr      / 대국민 공개

국립합복시대 | 지방자치가 혁명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204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운영 예산지원 내용 구체화
  - 제7조(운영) 제5항
-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 제18조 제5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2015. 9.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5,  
FAX 032-560-271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 3.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운영 예산지원 내용 구체화
-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 중복문구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 재정형편상”을 “그 밖의 재정형편 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해 지정된 자”를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센터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자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운영비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제7조제8항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중”을 “제1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포함하여 25인”을 “포함하여 25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7조제3항 중 “의한 위원 위촉시 10인”을 “따른 위원 위촉 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할구역외”를 “관할구역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 ----- ----- ----- ----- ----- -----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생략) ④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u>기타 재정형편상</u>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그 밖의 재정형편상</u> ----- ----- ----- -----
제7조(운영) ①·② (생략) ③위원회는 제2항에 <u>의해 지정된 자</u>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u>제10조제5항의</u> <u>규정에 의해</u>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따라 지정된 사람</u> ----- ----- ----- <u>제10조제5항에 따라</u> -----

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 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⑥·⑦ (생략)

⑧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 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 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 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 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 율, 감면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별표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④ (현행과 같음)

⑤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

1. 주민자치 건전한 발전을 위 한 운영비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음 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⑥·⑦ (현행과 같음)

⑧-----구역 내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중-----

③-----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  
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12조(주민참여) ① (생략)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  
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  
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  
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  
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  
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  
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  
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구역 내-----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

-----범위-----  
-----  
-----범위-----  
-----

제14조(보고) ① -----

-----3개월 전까지-----  
-----  
-----  
-----

②-----따른-----

-----  
-----  
-----  
-----  
-----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 위촉시 10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④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④ (생략)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다른 위원 위촉 시 10명-----

④-----다른-----

⑤ (현행과 같음)

⑥-----해당-----

-----종사하는 사람으

-----사람을-----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생략)

1. 당해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5. (생략)
6.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21조(회의)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1명-----  
-----  
-----  
-----

제20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해당---관할구역 외-----  
-----
2. -----6개월  
이상-----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따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등) -----  
-----

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범위-----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20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2.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구성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내용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2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5,  
FAX 032-560-271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3.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구성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내용

##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 서구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희망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84) 또는 Fax(560-274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 2.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2015.7.1 시행)에 따라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반드시 필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028(2015.06.24)】
-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제시 【시 사회복지봉사과-14205(2015.08.17)】 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로 제정 함.

###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5-1206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인해 강제로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8.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2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 등록의 규정을 삭제하고 시스템 관리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자원봉사등록(제11조)의 조항을 자원봉사 관리 변경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하여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희망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5883) 또는 Fax(560-574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한다(제 11조) 조항이 법령의 위임 및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2699(2015.5.15)호에 의거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자원봉사 등록(제11조)의 조항을 자원봉사 관리(제11조)로 변경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를 원할 경우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원봉사 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회계 연도”를 “회계연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2항의”로, “대차대조표등”을 “대차대조표 등”으로, “5년간”을 “5년 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원봉사자에 대해”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를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로, “자원봉사자에 대해”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p> <p>제7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한다.</p> <p>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p> <p>①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p>	<p><u>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따라 ----- -----.</p> <p>제7조(센터의 조직) ① ----- ----- 1명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p> <p>④ ----- ----- 등에 ----- ----- -----.</p> <p>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p> <p>① 센터장 -----</p>

따라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센터 장 선임시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행정을 총괄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센터 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 등록)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 각 호 -----  
-----  
---- 사람이어야 ----.

② 센터장 -----  
-----  
-----  
-----.

③ -----  
----- 센터장 -----  
---- 한 번만 -----  
--.

제10조(센터의 지원) ① -----  
-----  
-----  
----- 범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센터장 ----  
-----  
-----.

제11조(자원봉사 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지  
 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  
 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  
 ·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  
 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  
 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  
 사주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  
 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 -----  
 ----- 회계연도 ---  
 ----- 해당 ---  
 -----  
 -----  
 -----  
 -----

② -----  
 -----  
 ----- 2월 말 ---  
 -----

③ ----- 제2항의 -----  
 ----- 대차대조표 등 ---  
 ----- 5년 간 ---  
 -----  
 -----

제13조(지도감독) ① -----

----- 연 1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  
 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수 있다.

1. ~ 4. (생략)

제16조(포상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구 공공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하는 등 사회적 보상과 우대 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생략)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포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원봉사자에게  
-----  
-----  
-----  
-----.

제18조(보험가입) ① -----  
-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  
-----  
-----.

② 제1항에 따른 -----  
-----  
-----  
-----.

1. (현행과 같음)
2. ----- 자원봉사자에게 -----  
-----.
3. -----  
-----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  
----- 자원봉사자에게 ----

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  
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

③ 그 밖의 -----  
-----.

제19조(실비지급) -----  
----- 자원봉사자에게  
-----  
-----.

제20조(시행규칙) -----시행에  
-----  
--.

## 관 계 법 령 발 취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1조)

제11조(학교·직장등의 자원봉사활동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2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청렴상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청렴상 신설 : 기존 포상의 종류에 청렴상 추가
- 청렴상 운영 규칙 제정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한 서식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 3. 의견 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73) 또는 Fax (56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공무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감사장”을 “청렴상, 감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헌신한 자”를 “헌신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우

수한 자”를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된 자”를 “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헌신한 자”를 “헌신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10조제2항 중 “기념회장 기타”를 “기념회장,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를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년간”을 “1년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및 별표 2에 의한다”를 “및 별표 2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상장의 경우에는”을 “청렴상 및 상장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한 질서상은 연4회”를 “따른 질서상은 연 4회”로 한다.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								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④ 국 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직급·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					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㉑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과			직위			년 월 일 성명		직인		

1202-2(2-1)일(1)

1984.1.26 승인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⑱ 년 월 일	⑳ 이 력	㉑ 년 월 일	㉒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㉓ 년월일	㉔ 내 용	㉕ 년 월 일	㉖ 내 용
㉗ 공 적 사 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구</u> -----                      -----                      -----.</p>
<p>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u>공무원</u>,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p>	<p>제2조(포상대상) -----<u>따</u>  <u>른</u> -----                      -----<u>인천광</u>  <u>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u>  <u>무원</u>-----.</p>
<p>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u>구청장</u>이 행한다.</p>	<p>제3조(포상권자) -----<u>인천광</u>  <u>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u>  <u>라 한다)</u> --.</p>
<p>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u>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u></p>	<p>제4조(포상의 종류) -----  <u>따른</u> -----  <u>청렴상, 감사장</u> -----                      -----.  <u>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u>  <u>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u></p>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 3. (생략)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u>헌신한 자</u></p>	<p>제5조(표창장) -----<u>각</u>  <u>호의 어느 하나에</u> -----.                      1. ~ 3. (현행과 같음)                      4. -----                      -----<u>헌신한 사람</u></p>

<p>5.·6. (생 략)</p> <p>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의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p> <p>1. ~ 4. (생 략)</p> <p>5. <u>기타</u> 도시질서 확립</p> <p>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5.·6. (현행과 같음)</p> <p>제6조(질서상)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u></p>
<p>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p> <p>1. ~ 4. (생 략)</p>	<p>제7조(감사장)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p>1. (생 략)</p> <p>2. 학술, 예술, 체육, <u>기타</u>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p> <p>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u>우수한 자</u></p>	<p>제8조(상장)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의</u> -----</p> <p>3. -----<u>우수한 사람</u></p>
<p>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u>공무원중 다음</u></p>	<p>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 ----- -----<u>공무원 중 다</u></p>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국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6조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회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회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 3. (생략)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포상장과 기념회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생략)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  
-----된 사람
2. -----  
-----헌신한 사람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 -----  
---기념회장, 그 밖의 -----  
-----.

③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 -----  
-----그 밖의 -----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1년 간 -----
5. 그 밖의 -----  
-----
6. -----  
-----및 별표 2를 따른다.

제11조(포상절차) ① (현행과 같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상을 제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청렴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 공직사회의 자율적인 내부통제로 잠재적 비리를 예방하여 올바른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고자 함.

### 2. 주요 제정내용

- 청렴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기준
- 청렴상 수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기구 및 절차
- 표창 및 특혜 부여에 관한 사항 등

###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73) 또는 Fax(56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림상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렴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준)** ① 청렴상 포상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6명 내외로 추천한다.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청렴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른 청렴상 수상자는 3년 이내 추천을 제외한다.

**제3조(선정심의)** ① 청렴상 수상자는 추천받은 6명 내외의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1. 청렴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4조(포상 등)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평정시 가점
2. 상금
3. 그 밖의 포상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청 령 상

(소 속) ○○○○○○

(직, 성명) ○○○ ○○○

위 직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청렴한 공직자로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2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관련부서 과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 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부서 과장 및 자원봉사 센터장으로 변경(제4조)
-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자원봉사센터장에서 총무기획팀장으로 서기를 총무기획팀장에서 교육홍보팀장으로 변경(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희망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5883) 또는 Fax(560-574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관련부서 과장,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됨으로 간사와 서기를 센터의 팀장으로 변경

### 3. 주요내용

-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부서 과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변경(제4조)
-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자원봉사센터장에서 총무기획팀장으로 서기를 총무기획팀장에서 교육홍보팀장으로 변경(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원조례」”를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조례」(이하”를 “지원 조례」(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을 “관련부서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 중 “두며 간사는 센터장, 서기는 총무기획팀장”을 “두며 간사는 총무기획팀장, 서기는 교육홍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물품관리조례”를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를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 중 “제18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자의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를 “제18조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의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u></p>	<p><u>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u>지원조례</u>」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지원 조례</u>----- ----- ----- -----.</p>
<p>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u>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 ----- ----- ----- ----- <u>규칙을 따른다.</u></p>
<p>제3조(센터의 기구)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u>지원조례</u>」(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센터의 기구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2개팀을 두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p>	<p>제3조(센터의 기구) ----- ----- <u>지원 조례</u>」(이하 ----- -----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u>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u>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당연직</p>	<p>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u>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u></p>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3. (생략)

제5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련부서 과장 및 센터장 -----  
-----.

④ -----  
----- 해당하는 사람 -----  
-----  
----- 풍부한 사람 -----  
-----.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

2. 3.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의 임기) -----  
----- 한 번만 -----  
-----.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

제10조(간사) -----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 서기는 총무기획  
팀장이 된다.

제12조(재원) 센터 유지 및 사업운  
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수익금 등

제13조(회계관리) ① ~ ③ (생략)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  
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  
용한다.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  
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17조(보조금의 관리) ①·② (생략)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  
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  
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  
다.

제18조(직원의 임용 등) ① ~ ③  
(생략)

----- 두며  
간사는 총무기획팀장, 서기는 교  
육홍보팀장 ----.

제12조(재원)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의 -----

제13조(회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재무회계 규칙 -  
-----.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  
-----  
-----  
-- 물품관리 조례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의 관리)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18조(직원의 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당연 퇴직, 직권 면직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다만, 센터장의 임기는 근무상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다.

⑤ (생략)

제19조(보수지급) ① (생략)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팀장은 별정직 6급 상당 또는 7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21조(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③ (생략)

④ -----  
-----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 한다.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수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인) ① -----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보험가입) 조례 제18조 규  
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자의 결정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가  
 입 대상인원을 확정한다.

제23조(보험가입) --- 제18조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의 결정기준  
은 예산의 범위 -----  
 -----  
 -----  
 -----.

## 관 계 법 령 발 취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1조)

제11조(학교·직장등의 자원봉사활동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21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09. 0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입법취지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과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홍보미디어과, 전화 560-4143, 팩스 560-2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 2. 제정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과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자유총연맹조직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3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민주가치구현활동 : 6.25음식시식회 및 호국안보전시회, 안보현장견학</li> <li>○ 나라사랑 서구사랑 태극기달기 운동</li> <li>○ 민주시민실천운동 : 기초질서지키기, 그린환경만들기 운동</li> <li>○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 : 건전한 생활의식 개혁운동, 학교폭력, 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li> </ul>

## 관계법령 발췌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3조,제32조의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09. 0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입법취지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구정 소식지 발행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참여율을 제고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구정 소식을 전달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구 소식지 제호 변경
- 편집위원의 임기 제한을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 특성상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
- 독자투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내역을 증액하여 구민참여율 제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홍보미디어과, 전화 560-4143, 팩스 560-2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서구 소식지 제호 변경
- 편집위원 임기를 연임하여 업무 특성상 연속 및 전문성 제고
- 독자투고 실비보상내역을 증액하여 소식지 구민참여 제고

## 3. 주요내용

- ‘서구구정소식’에서 ‘Green 서구’로 제호 변경함
- 편집위원의 임기 제한을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 특성상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 독자투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내역을 1만원 상품권에서 3만원으로 증액,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구민참여율을 제고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행에 관하여”를 “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주1회”를 “주 1회”로 한다.

제8조 중 ““서구구정소식”으로”를 ““Green 서구”로”로 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매월1회”를 “매월 1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및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발행에 관한”을 “발행에”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위축을 해제”를 “해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실비보상내역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원 고 료	비고
전문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평, 수필, 시, 연재소설, 영어 등</li> <li>· 200자 원고지 1매당 × 10,000원</li> <li>- 만화 1컷 10,000원</li> <li>- 만평 40,000원</li> </ul>	
국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참여 독자 투고</li> <li>· 1편당 30,000원 상당의 상품권</li> </ul>	



제11조(배부범위)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  
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 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② (생략)

제12조(배부방법) ① (생략)

② 소식지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소식지 발행부서의  
장, 구의회 의원 1명, 소식지 발  
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  
의는 월1회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제11조(배부범위) ① -----  
-----  
-----  
및 그 밖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배부방법) ① (현행과 같  
음)

② -----  
-그 밖의 사항 -----  
-----.

제16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발  
행에 -----  
-----  
-----사람으로 --.

제18조(임기) -----  
-----하되, -----  
-----.  
-----  
-----.

제20조(회의 등) ① -----  
-----월 1회 -----  
-----

<p>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2조의2(명예기자)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u>위촉을 해제</u>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2(명예기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u>해촉</u>-----.</p> <p>④ (현행과 같음)</p>
--	---